

## 【사건번호 2022-025】 국토교통부 발간물 데이터 사건

### 1. 개요

-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 신청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 2.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영리적 이용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 3. 사실조사

- 이 사건 데이터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제도 해설서로 피신청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나, 해당 데이터가 게시된 웹페이지 및 데이터 본문에 작성자, 발행인, 저작권자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데이터에 관한 권리자를 파악하기 어려움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신청 데이터는 재단법인 A가 재단법인 B에 위탁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저작권은 이들 재단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재단법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뿐 해당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음
  - ※ 해당 재단법인들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님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에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조정내용

#### 가. 조정결정 사항

-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 소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해설서로서 국토교통부 MI(Ministry Identity)를 부착한 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실제 작성자나 저작권자의 정보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권리자가 피신청인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데이터에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5. 조정결과

- 상기와 같은 조정안을 피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락거부하여 조정불수락